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7237
----------	------

제안연월일 : 2009. 12. 30.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17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치고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9년 9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6.)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7.)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구인·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노동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이와 연계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까지 확대하며,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확대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고 지방의 특수한 취업 환경을 고려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고령자 구인·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취업 적응훈련 실시,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을 시·도지사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

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1조제1항·제2항).

다.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작성·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3조제2항·제3항).

라.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노동부장관이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20조제2항·제3항).

마.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노동부장관 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은 고령자가”를 “노동부장관 등은 고령자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 등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으로, “취업알선”을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단체를”을 “단체 또는 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단체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1조의3제1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제13조의 제목 “(사업주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 등)”을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

출하도록 요청할”을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를 “기관의”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3조제4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않는”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을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을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변경 권고에”를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퇴직예정자등의 구직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고용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고용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영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년 연장계획”을 “운영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③~⑤ (생략)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지정취소처분 또

<신 설>

<신 설>

3. (생 략)

② (생 략)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기준고  
용률 이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  
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획의 변경을 권  
고할 수 있다.

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  
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  
분을 받은 경우

6.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  
황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고  
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  
고할-----.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  
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  
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  
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  
다.

④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게 그 계획을 적절히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① (생략)

② 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4항

<삭 제>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  
-----  
-----  
-----기관의-----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2항

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  
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  
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  
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  
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  
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 ① (생략)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  
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 연장  
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않는---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  
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년의 연  
장을 권고할-----  
-----.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  
한 사유 없이-----  
-----.

제21조의3(퇴직예정자등의 구직  
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  
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

제2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년 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5.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고용현황-----  
---

3. -----  
--운영현황-----  
-----

4.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삭 제>